

## 임예진 관세법(2023년 대비) 개정사항 (7)

- 관세법 시행령 2023. 4. 11. 개정 [시행 2023. 4. 18]
- 관세법 시행규칙 2023. 4. 11. 개정 [시행 2023. 4. 18]

### \* 공지사항

인천세관을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으로 개편함.

p.303 : 3. ①, ④, ⑤ 수정 / ⑥ 신설

### 3.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세관장 [규칙 제61조]

상기 1. (2)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세관장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.

- ① 인천공항세관장 및 김포공항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: 인천공항세관장
- ② 서울세관장 · 안양세관장 · 천안세관장 · 청주세관장 · 성남세관장 · 파주세관장 · 속초세관장 · 동해세관장 및 대전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: 서울세관장
- ③ 부산세관장 · 김해공항세관장 · 용당세관장 · 양산세관장 · 창원세관장 · 마산세관장 · 경남남부세관장 및 경남서부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: 부산세관장
- ④ 인천세관장 · 평택세관장 · 수원세관장 및 안산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: 인천세관장
- ⑤ 대구세관장 · 울산세관장 · 구미세관장 및 포항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: 대구세관장
- ⑥ 광주세관장 · 광양세관장 · 목포세관장 · 여수세관장 · 군산세관장 · 제주세관장 및 전주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: 광주세관장

p.304 : 1.의 (2) 관련 시행령 박스

**1.의 (2) 관련 시행령**

**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 [영 제144조의2 제1항]**

상기 1. (2)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”이란 인천공항세관·서울세관·부산세관·인천세관·대구세관 및 광주세관(이하 “본부세관”이라 한다)을 말한다.

p.601 : 3-1.의 (1) 관련 시행령 박스

**3-1.의 (1) 관련 시행령**

**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 [영 제266조의2 제1항]**

상기 3-1. (1)에 따라 인천공항세관·서울세관·부산세관·인천세관·대구세관 및 광주세관 및 평택세관에 관세범직조사심의위원회를 둔다.